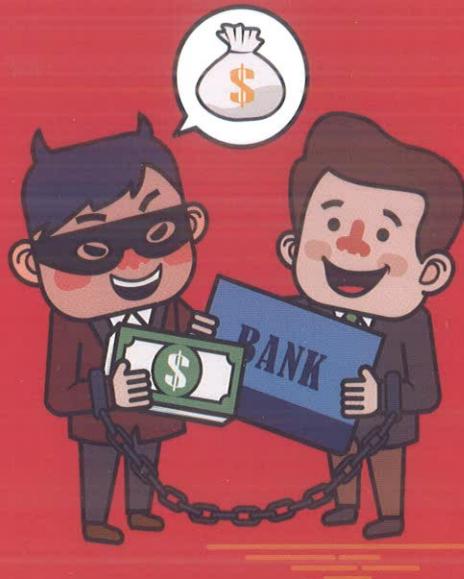


불법사금융

≡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안내 ≡

불법고금리 / 유사수신 / 대출사기



[불법사금융 피해신고]

 경찰청 112  금융감독원 1332
지방자치단체 120



불법고금리 피해예방

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%입니다.
대출상담 전에 파인(fine.fss.or.kr)에서
제도권 금융회사·등록 대부업체 여부를
먼저 확인하시고, 대출시 작성된 계약서,
상환내역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세요.

불법사금융피해
경찰청(☎ 112)
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
(☎ 1332) 신고!





≡ 불법사금융 피해예방



불법금융투자 피해예방

금융투자상품을

(선물, 옵션, 주식, 해외선물, FX마진 등)

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제도권 증권사*,
선물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, 이를 금융
회사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을 통해서
거래하십시오.

*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(<http://fine.fss.or.kr>) :
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이용

유사수신 피해예방

‘법령에 따른 인·허가나 등록·신고를
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
원금과 고수익을 보장’ 한다며 자금을
모집하는 경우 이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일
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십시오.

유사수신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처럼
감독당국의 관리·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
이들에게 맡긴 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

방 및 대응요령 안내 =



보이스피싱 예방

검찰, 경찰,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 이체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 만약 사기범에게 자금을 송금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(☎112)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스마트폰

문자메세지상의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.



대출사기 예방

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출중개 광고에는 대응하지말고, 자금이 필요할 땐 금융회사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을 통해 대출 상담을 받으십시오.

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(www.koreaeasyloan.com)

대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에 보증료, 수수료, 예치금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% 사기이니 주의하십시오.

예금통장을 양도할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, 양도자도 법에 따라 처벌*을 받을 수 있으니 통장을 절대 타인에게 양도하지 마십시오.

*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 49조 제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

- 1 법정이자율(24%)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 등을 요구하세요!
- 2 폭행·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 휴대전화 녹화·녹음 등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(☎112)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!
- 3 검찰·경찰·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 계좌번호,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!
- 4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, 보증료,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,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서(☎112)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!
- 5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거래하세요. [금융감독원(☎1332)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문의]
- 6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!
- 7 대출증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☎1332)에 신고하여 돌려받으세요!
- 8 대출신청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고, 새희망홀씨, 햇살론, 미소금융을 먼저 신청해 보세요!
- 9 본인의 능력으로 체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“채무조정제도”, 법원의 “개인회생제도” 등을 활용하세요!
- 10 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거나, 금융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(☎1332)과 상담하세요!

금융사기 피해신고

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.



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는
신속히 경찰청(☎112) 또는 금융감독원
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(☎1332)에
신고하십시오.

불법금융파라치 신고제 운영

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, 보이스피싱, 대출사기, 불법금융투자 및 고금리 시금융 등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정확성, 피해규모,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건당 최고 1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


금융감독원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.